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특허법	120분		

【 A-1 】 (30점)

甲은 물질 X의 발명자로서 이를 2010. 11. 1. 미국에 특허출원한 후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청구항 1】에 물질 X를 【청구항 2】에 물질 X를 관절염 치료에 이용하는 발명 Y를 기재하여 2011. 10. 5.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乙은 2009년초부터 물질 X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1. 5. 1. 화학분야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물질 X와, 물질 X의 제조방법인 Z에 대하여 발표하고, 2012. 4. 5.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청구항 1】에 물질 X를 【청구항 2】에 물질 X의 제조방법인 Z를 기재하여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 (1) 甲의 특허출원과 乙의 특허출원이 1특허출원범위를 만족하는지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 (2) 乙의 특허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 (3) 甲이 출원한 【청구항 2】의 발명 Y가 특허를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할 요건과 명세서 기재시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점)

【 A-2 】 (20점)

A 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B를 실시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2011. 11. 24.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1) 확인대상발명(B)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점)
- (2) 만약, 甲이 확인대상발명(B)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 B-1 】 (30점)

甲은 발명 P(A+B+C+D)에 대하여 2009. 2. 20. 특허를 취득하였다. 乙은 2009. 6. 1.부터 발명 P를 판매하여 왔다. 2009. 7. 10.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乙에게 발송하였다. 乙은 발명 P 판매를 중지하고, 甲의 특허발명 P는 A+B라는 비교대상발명 1과 C+D라는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을 결여한 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0. 6. 1.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2010. 6. 25.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관여하는 기술심리관 丁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甲의 특허발명이 자신이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 중 특허등록결정을 하였던 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1. 2. 2.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甲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포기하였고 결국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기술심리관 丁이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자신의 특허출원을 심사하였던 사실을 알고 재심을 청구하였다.

- (1) 甲의 재심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설명하시오. (8점)
- (2) 甲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다면 乙이 발명 P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2점)
- (3) 기술심리관 丁이 취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 (4) 위에 기술된 사실관계와는 달리 만약 甲이 소송의 심리 중에 기술심리관 丁이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甲의 특허발명의 심사에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 B-2 】 (20점)

甲은 乙의 특허발명 A+B+C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 C를 생략하여 A+B만으로 된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 (1) 甲의 실시가 乙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학설의 논거와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시오. (12점)
- (2) 위와 같이 乙의 특허발명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 균등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8점)

